

의안번호	2215929
의 퇴 인	김정호 의원
회 답 일	2026. 1. 30.
추계번호	25A74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소규모설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안 제12조의14제1항 및 제2항)

- 이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계약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안 제12조의14제6항) 계약시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¹⁾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규모설비 등에 대해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안 제12조의14제3항), 안 제12조의14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규모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소규모설비에 대한 지원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소규모설비의 규모를 추정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하나, 소규모설비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워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에너지원별 발전소 설비 현황을 보면, 태양광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100kW 미만 발전소수는 21,038개로 전체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태양광 발전소 설비 현황

(단위: 개, kW)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0kW 미만 발전소수	19,646	21,940	18,327	18,654	21,038
100kW 미만 용량	1,311,834	1,613,477	1,279,783	1,230,441	1,405,711
100kW 이상 1MW 미만 발전소수	4,100	3,293	2,351	1,846	2,561
100kW 이상 1MW 미만 용량	1,928,363	1,710,460	1,212,199	862,758	1,028,787
1MW 이상 발전소수	169	164	88	112	145
1MW 이상 용량	730,219	672,860	488,883	630,385	886,146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91)에 대한 비용추계서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